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26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김남희・이기헌・박상혁

김우영 • 민병덕 • 김영환

한민수 · 김영진 · 송옥주

조정식 · 최기상 · 임오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으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 중과) ①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 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 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 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 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 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 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 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특례제한법 : 제24조제1항제2 한 법률 | 을 적용받는 산업단 호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지 ·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 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는 산 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 업단지ㆍ유치지역-----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 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	
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